# 2026년도 후반기 해병대 일반군무원 경력경쟁채용 공고

2026년도 후반기 해병대 일반군무원 경력경쟁채용 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해 병 대 사 령 관**

## 1. 경력경쟁채용 선발 예정 인원 [18명]

### 가. 일반경력경쟁 채용 : 1명

| 채용직급/인원 | | | | 응시요건 | 근무예정지 | 임용예정일 |
|---|---|---|---|---|---|---|
| 소속/순번 | 직위 | 직급 | 인원 | | | |
| 해병/1 | - | 총포 9급 | 1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br>① 하사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하사 이상 계급에서 총포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군인경력】**<br>② 9급(상당) 이상 군(공)무원 퇴직(예정)자로서 9급(상당) 이상 계급에서 총포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공무원경력】**<br>③ 총포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민간경력】**<br>④ 군무원 공개경쟁채용 응시 및 가산 자격증 중 총포 직렬 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총포 분야 2년(산업기사 이상은 경력 무관) 이상 근무경력자 | 전국 | '27. 2. 1. 이후 |

### 나. 군무원인사법 제7조 제2항 제9호에 따른 경력채용 : 1명

| 채용직급/인원 | | | | 응시요건 | 근무예정지 | 임용예정일 |
|---|---|---|---|---|---|---|
| 소속/순번 | 직위 | 직급 | 인원 | | | |
| 해병/2 | - | 군사정보 9급 | 1 | **[군인사법 제37조 제3항의 행위자]**<br>군무원인사법 제7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군인사법 제37조 제3항의 행위(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를 한 군인(예비역 포함) | 전국 | '27. 2. 1. 이후 |



### 다. 군무원인사법 제7조 제2항 제10호에 따른 경력채용 : 1명

| 채용직급/인원 | | | | 응시요건 | 근무예정지 | 임용예정일 |
|---|---|---|---|---|---|---|
| 소속/순번 | 직위 | 직급 | 인원 | | | |
| 해병/3 | - | 행정 9급 | 1 | **[군인사법 제54조의 2에 따른 전사자·순직자의 유족]**<br>군무원인사법 제7조 제2항 제10호에 따라 군인사법 제54조의 2에 해당 되는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결정된 군인의 유족(사망한 군인의 배우자·자녀·부모·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br>* 순직자 중 군인사법 제5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순직1형만 해당 | 전국 | '27. 2. 1. 이후 |

### 라. 장애인 구분 모집 : 15명(중증 : 4명, 일반 : 11명)

| 채용직급/인원 | | | 응시요건 | 근무예정지 | 임용예정일 |
|---|---|---|---|---|---|
| 소속/순번 | 직급 | 인원 | | | |
| 해병/4 | 군사정보 9급 | 1 | **[장애인 구분 모집]**<br>**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br>① 하사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하사 이상 계급에서 군사정보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군인경력】**<br>② 9급(상당) 이상 군(공)무원 퇴직(예정)자로서 9급(상당) 이상 계급에서 군사정보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공무원경력】**<br>③ 군사정보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민간경력】** | 전국 | '27. 2. 1. 이후 |
| 해병/6 | 시설 9급 | 2 | **[장애인 구분 모집]**<br>**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br>① 하사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하사 이상 계급에서 시설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군인경력】**<br>② 9급(상당) 이상 군(공)무원 퇴직(예정)자로서 9급(상당) 이상 계급에서 시설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공무원경력】**<br>③ 시설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민간경력】**<br>④ 군무원 공개경쟁채용 응시 및 가산 자격증 중 시설 직렬 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시설 분야 2년(산업기사 이상은 경력 무관) 이상 근무경력자 | 전국 | '27. 2. 1. 이후 |

| 채용직급/인원 | | | 응 시 요 건 | 근무예정지 | 임용예정일 |
|---|---|---|---|---|---|
| 소속/순번 | 직급 | 인원 | | | |
| 해병 / 7 | 전차 9급 | 2 | **[장애인 구분 모집]**<br>**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br>① 하사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하사 이상 계급에서 전차 또는 차량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군인경력】**<br>② 9급(상당) 이상 군(공)무원 퇴직(예정)자로서 9급(상당) 이상 계급에서 전차 또는 차량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공무원경력】**<br>③ 전차 또는 차량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민간경력】**<br>④ 군무원 공개경쟁채용 응시 및 가산 자격증 중 전차 직렬 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전차 또는 차량 분야 2년(산업기사 이상은 경력 무관) 이상 근무경력자 | 전국 | '27. 2. 1. 이후 |
| 해병 / 8 | 차량 9급 | 2 | **[장애인 구분 모집]**<br>**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br>① 하사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하사 이상 계급에서 차량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군인경력】**<br>② 9급(상당) 이상 군(공)무원 퇴직(예정)자로서 9급(상당) 이상 계급에서 차량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공무원경력】**<br>③ 차량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민간경력]<br>④ 군무원 공개경쟁채용 응시 및 가산 자격증 중 차량 직렬 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차량 분야 2년(산업기사 이상은 경력 무관) 이상 근무경력자 | 전국 | '27. 2. 1. 이후 |
| 해병 / 9 | 기체 9급 | 2 | **[장애인 구분 모집]**<br>**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br>① 하사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하사 이상 계급에서 기체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군인경력】**<br>② 9급(상당) 이상 군(공)무원 퇴직(예정)자로서 9급(상당) 이상 계급에서 기체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공무원경력】**<br>③ 기체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민간경력】**<br>④ 군무원 공개경쟁채용 응시 및 가산 자격증 중 기체 직렬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전국 | '27. 2. 1. 이후 |



| 채용직급/인원 | | | 응 시 요 건 | 근무예정지 | 임용예정일 |
|---|---|---|---|---|---|
| 소속/순번 | 직급 | 인원 | | | |
| 해병 / 10 | 항공기관 9급 | 2 | **[장애인 구분 모집]**<br>**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br>① 하사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하사 이상 계급에서 항공기관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군인경력】**<br>② 9급(상당) 이상 군(공)무원 퇴직(예정)자로서 9급(상당) 이상 계급에서 항공기관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공무원경력】**<br>③ 항공기관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군인경력】**<br>④ 군무원 공개경쟁채용 응시 및 가산 자격증 중 항공기관 직렬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전국 | '27. 2. 1. 이후 |
| 해병 / 11 | 행정 9급 | 3 | **[중증장애인 구분 모집]**<br>**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13조의 2에 따라 중증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br>① 하사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하사 이상 계급에서 행정 분야 1년 이상 근무경력자 **【군인경력】**<br>② 9급(상당) 이상 군(공)무원 퇴직(예정)자로서 9급(상당) 이상 계급에서 행정 분야 1년 이상 근무경력자 **【공무원경력】**<br>③ 행정 분야 1년 이상 근무경력자 **【민간경력】**<br>④ 2급 및 3급 전산회계운용사 취득 후 행정 분야 1년 이상 근무경력자 또는 1급 전산회계운용사 자격증 소지자 | 전국 | '27. 2. 1. 이후 |
| 해병 / 12 | 탄약 9급 | 1 | **[중증장애인 구분 모집]**<br>**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13조의 2에 따라 중증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br>① 하사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하사 이상 계급에서 탄약 분야 1년 이상 근무경력자 **【군인경력】**<br>② 9급(상당) 이상 군(공)무원 퇴직(예정)자로서 9급(상당) 이상 계급에서 탄약 분야 1년 이상 근무경력자 **【공무원경력】**<br>③ 탄약 분야 1년 이상 근무경력자 **【민간경력】**<br>④ 군무원 공개경쟁채용 응시 및 가산 자격증 중 탄약 직렬 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탄약 분야 1년(산업기사 이상은 경력 무관) 이상 근무경력자 | 전국 | '27. 2. 1. 이후 |

※ 공개경쟁채용시험 직렬별 응시 및 가산 자격증·면허증 : '참고 1' 확인

## 2. 응시자격 요건

### 가. 공통 응시자격 요건

1) 최종(면접)시험 시행예정일('26. 12. 17.) 기준으로 「군무원인사법」 제10조의 결격사유 및 제31조의 정년에 해당하거나,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4조 또는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군무원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20헌마1181(2022.11.24.), 2020헌마1605·2022헌마1276(병합) (2023.6.29.))에 따라 2024.6.1.부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4 나목 중 아동복지법(제14925호) 제17조 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2329호) 제11조 제5항 가운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결격사유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에서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정부 입법으로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추진 중인바, 이에 따르면 동법 개정 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임용될 수 없고, 임용되었더라도 개정법 시행일에 퇴직하게 됩니다.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군무원인사법 제31조(정년)**
- 군무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다만,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 시에는 예외로 한다.

2) 남성 응시자는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3)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8.12.31. 이전 출생자)

### 나. 응시요건 : 채용 직위별 자격요건 및 직무내용

1) 공통사항

① **'전역(예정)군인'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시험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전역한 자에 한하여 응시 가능**
* 예시) **'26. 10. 12.** 시험공고의 경우 **'23. 10. 12. 이후** 전역자이면 해당

② **'경력(군(공)무원, 근무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 해당경력을 기준으로 시험 공고일(공고일 첫날) 현재 전역·퇴직(예정)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응시 가능**
* 예시) '26.10.12. 공고의 경우 '23.10.12. ~ '26.10.11. 기간 중 관련분야 경력이 하루라도 있는 자에 한해 응시 가능

③ **'자격증'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시험공고일(공고일 첫날) 현재 3년 이내 전역·퇴직(예정) 요건에 구속되지 않음.(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이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④ **경력계산 시 【민간경력】은 공무원 경력(군인 경력 포함)을 합산 할 수 없음.**

⑤ **전역·퇴직(예정)자라도 응시요건 자격증으로 응시할 경우, 시험공고일(공고일 첫날) 현재 3년 이내 전역·퇴직(예정) 요건에 구속되지 않음.**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⑥ **근무 경력기간 계산, 자격증 등 소지여부는 채용직위별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6. 12. 17.)을 기준으로 판단함**
* 경력기간은 연·월·일까지 계산하되, 력(曆)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민법 제160조 참조)

⑦ **동일한 모집공고 / 일정으로 진행되는 채용시험 내 중복 또는 복수로 지원 및 시험응시 불가**

### 2) 「군무원인사법」 제7조 제2항 제9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

-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를 한 군인(예비역 포함)**

① 「군인사법」 제37조 제3항에 따른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투행동 등으로 한다.

1. 전시 적과의 전투행동
2. 해외파병근무 중 적과의 전투행동
3. 평시의 대침투작전 및 대테러작전 등 비정규전 중의 전투행동
4. 무장폭동·반란 또는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전투행동
5. 지상·해상 및 공중에서의 경계 및 작전 활동
6. 작전계획 수행을 위하여 부대가 실시하는 훈련과 작전에 필요한 훈련

② 「군인사법」 제37조 제3항에 따른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1.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임무를 수행하여 전군(全軍)의 본보기가 되는 행위
2. 희생을 감수하고 솔선수범하여 군의 명예를 대외적으로 드높인 행위
3. 작전수행 중 큰 전공(戰功)을 세운 행위
4. 부하 또는 동료 등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본인의 희생을 무릅쓴 행위

- 위 "①항, ②항"의 행위는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87조(전투경력 및 명예로운 경력) ①항 제1호 및 제2호 가목과 나목** 참고

**제287조(전투경력 및 명예로운 경력)**

① '전투경력' 및 '명예로운 경력'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원에게 부여하는 경력을 말한다.

1. 전투경력 : 전시, 사변, 국가비상사태시 작전명령에 따른 전투행위를 하였거나, 이를 목적으로 지원행위를 한 인원에게 부여하는 경력. **단, 평시에는 국지도발 등에서 적과 직접적으로 교전행위를 한 인원으로 한정한다.**
2. 명예로운 경력 : 타의 귀감이 되는 행위를 한 다음 각 목의 인원에게 부여하는 경력
   - 가. 작전지원 : **적과 교전한 아군을 직접 지원한 인원 중**에게 타의 귀감이 되는 인원에게 부여하는 경력. 단, 제1호에 해당하는 인원은 제외
   - 나. 살신성인 : **임무수행 간 목숨을 잃거나 부상당한 인원 중** 타의 귀감이 되는 행위를 한 인원에게 부여하는 경력



### 3) 「군인사법」 제7조 제2항 제10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

- **「군인사법」 제54조의 2에 따른 전사자와 순직자의 유족의 범위는 "사망한 군인의 배우자·자녀·부모·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를 말한다.**
- **순직의 경우는 「군인사법시행령」 [별표 8]의 순직자분류기준표 중 순직Ⅰ형에 한함**
  - **순직자분류기준표 : "참고 1" 참조**
- **응시자격요건 증빙서류 : 전사 또는 순직 확인서 등**
  -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증 사본 1부(확인서 등)
  - (중앙)전공상심사결과통보서 1부 *** 국방부, 각군본부 혹은 군사령부 발급서류**
  - 전사자 또는 순직자와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4)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격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26. 10. 28.)까지 구분모집별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1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 **응시자격요건 증빙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

## 3. 시험방법 및 일정

### 가. 시험방법 : 서류전형(1차), 면접시험(2차)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6조

1) 서류전형(1차)

※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필수서류(예 :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미제출 시 서류전형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2) 면접시험(2차)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응시기회 부여

■ 면접 평가요소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21조]

① 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⑤ 예의·품행·준법성·도덕성 및 성실성

※ 합격기준

① 면접 평가요소 5개항목을 수(5점), 우(4점), 미(3점), 양(2점), 가(1점)로 평가하여 각 면접위원이 평가한 평균점수가 "미(15점)" 이상인 자

② 단,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2개 이상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가"로 평정한 경우 또는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가"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

※ 면접평가는 개별면접으로서 주제문 작성 등 개인발표를 포함하여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사전안내

3)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 공고 이후라도 신원조사 결과에 따른 임용결격사유 확인,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판정보류 시 임용이 불가하며, 또한 최초 공고된 임용예정일 前日까지 가산복무 등 개인사정으로 전역(퇴직)이 가능하여야 하며 불가한 경우 임용이 제한 될 수 있음

### 나. 시험일정

| 응시원서 접수 (서류제출)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 표 |
|---|---|---|---|
| '26. 10. 26. (월) ~ 28. (수) | '26. 11. 16.(월) ※ 면접시험 계획포함 | '26. 12. 14.(월) ~ 17.(목) * 기간 중 1일 | '26. 12. 30.(수) * 기간 중 1일 |

### 다. 유의사항

1)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발표 등 시험 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해군 홈페이지(www.navy.mil.kr)의 해군모집(군무원 채용관리-채용공고-공지사항)란에 공고합니다.

2) 시험일정/합격자 발표/임용예정일 등은 부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는 인터넷 해군 홈페이지「채용 공지사항」에 공고합니다.

* 위 사항을 해병대 홈페이지(www.rokmc.mil.kr) 공지사항란에서도 확인 가능



## 4. 응시원서 및 제출 서류 접수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

### 가. 접수기간/방법 : '26. 10. 26.(월) ~ 10. 28.(수) / 등기우편 접수

*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제출, '26. 10. 28.(수) 우체국 소인분까지만 유효

### 나. 제출주소 : 우)18334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시청로 1311 사서함601(206-2호)

해병대사령부 인사계획참모처 군무원과 군무원채용담당

* 봉투규격은 33.5 × 24.5cm(일반서류봉투 규격) 준수

* [붙임 5] 서식에 주소, 성명, 응시관련(순번, 응시직렬, 응시계급, 응시자) 내용을 기재하여 서류발송 봉투 겉면에 부착

* 클립, 비닐속지, 스테이플러 등 사용 금지

※ 직접방문, 기간이 경과한 우편 또는 택배를 통해 제출한 응시원서는 반송함.

※ 응시원서 등은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하고, 반드시 정부수입인지 첨부 (제출 기한 내 수입인지가 첨부되어 있지 않을 경우 제출서류는 무효처리함)

### 다. 제출 서류

1) [붙임 1] 응시원서 1부

* 반드시 해당 직급(6~7급 7,000원 / 8~9급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우체국 등에서 구입) * 정부수입인지 미첨부 시 원서접수 불가

* 응시원서 마감일 현재 아래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니, 대상자는 각 항목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정부수입인지(응시수수료) 면제대상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③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④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26.10.28.)으로「민법」제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자녀가 2명 이상일경우에 한함.

2) [붙임 2] 응시자격요건 및 증명서류 제출 목록 1부

### 3) 응시요건 증빙서류[경력증명서, 학위증명서, 자격증 등] 각 1부

#### 3)-① 경력요건 증빙서류[경력증명서 등] 1부

* 시험공고일('26. 10. 12.)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 발행한 경력증명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경력이 인정됨.

**※ 엄격하게 적용중이니 발행일 확인 필수**

**※ 경력(재직)증명서는 근무기관장 직인 등이 명시된 "원본에 한하여" 서류 심사에 반영**

**※ 국민연금가입증명서,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확인서 등은 미인정**

**※ 경력증명서에서 응시요건과 관련되는 경력부분은 형광펜으로 표시**

**※ 경력이 불명확 할 경우, 관련분야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현역군인 또는 군무원 : 참모총장 또는 소속부대장 발행 경력증명서**

* 국방인사정보체계상의 군경력증명서 신청 및 출력, 제출

**- 예비역 : 아래 중 택일하여 군경력증명서 발급, 제출**

* 지자체 주민센터 또는 국방부 또는 계룡대 민원실 발급 신청
* 국민신문고 민원신청으로 발급 신청 (2~3일 소요)

**- 기타 민간[사회] 경력 : 소속기관 또는 업체 발행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 **해당 직책과 직무내용, 근무기간을 반드시 명시**(직책, 직무내용, 근무기간은 서류전형 심의시 결정적 고려요소로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며 근무경력 인정기간은 전일제(1일 8시간) 근무경력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전일제가 아닌 근무경력이 있을 경우 해당 기간 및 기준 근무시간이 명시되어야 함)
* 국민연금가입증명서, 의료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고용보험확인서 등 **미인정**
* 외국에서 받은 경력증명서의 경우 국내 공증기관의 공증(번역, 번역사실 확인서) 및 진위공증서류(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등을 제출
* 근무경력서(재직증명서) 진위 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무지 인사 부서 연락처 (전화, 메일) 기재 (경력증명서 상에 연락처가 기재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수기로 기재)

> *** 경력증명서 제출 시 유의사항**
> **※ 발급기관 대표자 직인이 날인된 증빙서류만 인정**
> ※ 응시자격을 증빙하는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증빙자료(내용)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응시자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3)-② 자격증요건 증빙서류[자격증, 면허증 등] 사본 1부

*** 응시자격증은 국내기관에서 발급되어, 최종시험일 기준 유효한 자격증만 인정**



### 4) 군무원인사법 제7조 제2항 제9호에 따른 경력채용(예비역 포함)

→ 군 경력증명서 또는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5) 군무원인사법 제7조 제2항 제10호에 따른 경력채용

*** 전사 및 순직확인서 등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증 사본 1부(확인서 등)
- (중앙)전공상심사결과통보서 1부 *** 국방부, 각군본부 혹은 군사령부 발급서류**
- 전사자 또는 순직자와의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6) 장애인 구분 모집 증빙서류 : 장애인복지카드사본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 1부

* 중증장애인 지원자 : 중증장애인 확인서(지자체 발급)

### 7) [붙임 3] 제출자료 검증에 관한 동의서 1부

### 8) [붙임 4] 개인정보 제공 · 이용 동의서 1부

### 9) 채용시험 접수증 수령[수신]을 위한 회송용 일반편지봉투[등기우표 부착] 1매

※ 지원자 접수증 회송을 위하여 반드시 등기우표를 부착한 후 받으실 주소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송주소가 올바르지 않는 경우 접수증 수령이 불가하여 시험진행 시 불이익 발생 가능)

## 라. 서류제출 유의사항

1) **응시자격을 증빙하는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증빙자료(내용)가 미비할 경우 응시자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기관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를 재발급 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로 보완 가능

**예) 폐업회사의 경우(아래 ①~④ 모두 제출)**

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 증명서

②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중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③ 소득금액증명서

④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 * 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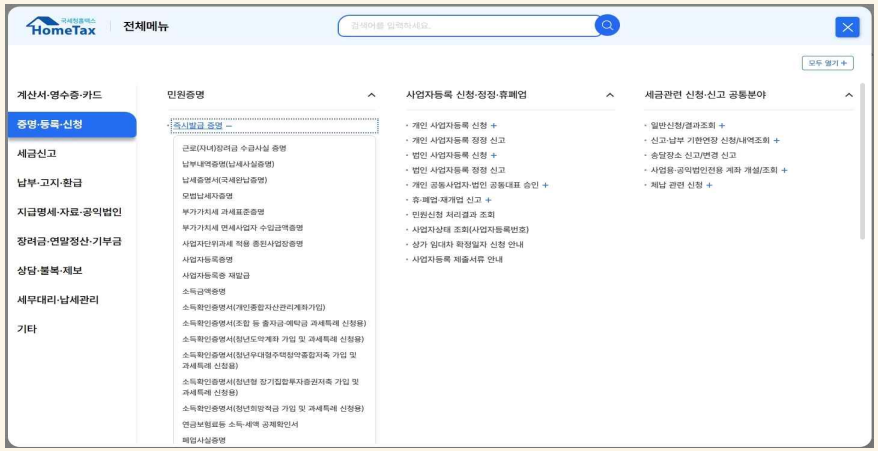
**[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전체메뉴 → 증명·등록·신청/민원증명 → 사실확인 후 발급·증명 → 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전체메뉴 → 증명·등록·신청/민원증명 → 즉시발급 증명 → 소득금액증명 → 근로자소득용 발급 (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2) 서류전형에서는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응시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점을 감안하여 경력증명서 내용만으로는 응시자격 증빙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별지를 활용하여 실제 수행업무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경력 증명서를 보완하고, 영문 약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전문(full text) 및 한글 명칭을 병기

예시1) 직무관련 증빙서류(인사명령지, 지휘관확인서 등)

※ 제출서류의 미비·기재 착오 등에 따른 불이익(불합격 등)은 응시자 본인 책임에 해당됨.

**※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필수서류**(예: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미제출시 서류전형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3) 응시자격 증빙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변조한 경우,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자격이 정지** 될 수 있음.



4) 원서접수 시에는 자격요건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26. 12. 17.)까지 자격요건을 취득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응시 가능하며, 해당 취득예정인 자격요건의 증빙자료를 응시서류 접수 기간['26. 10. 26.(월) ~ 28.(수)] 내 제출해야 함.

예시) 각종 자격증·면허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자격시험 접수증(응시표) 등

※ 해당 취득예정 자격요건 증빙자료의 미제출로 인한 1차 시험(서류전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5) **'26. 10. 28.(수)** 우체국 등기발송(소인 날인) 서류까지만 접수 유효하고, 오발송에 따른 불이익(불합격 등)은 응시자 본인 책임에 해당됨.

6) 제출서류 봉투에 반드시 **응시관련(순번, 응시직렬, 응시계급, 응시자)**을 필수 기재

* 우체국 등기우편 발송 봉투 겉면에 양식 **[붙임 5]** 출력 및 부착 후 발송

## 5. 가[산]점 적용

### 가.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 구 분 | 가산비율 | 비 고 |
|---|---|---|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적용 |
| 의사상자 등<br>*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 |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으로,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점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044-202-3255)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해야 함.

※ 취업지원대상 여부 및 가점비율을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

### 나.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1) 적용대상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및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2) 가점비율 :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5%/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3) 적용범위 : 6급 이하 경력경쟁채용 직위

- 취업지원 : 6급 이하 채용직위 중 채용예정 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 의사상자 : 6급 이하 채용직위 중 채용예정 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4) 선발범위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의사상자 등 가점의 경우 10%)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6. 기타 유의사항

가. 군무원 채용시험은 군무원인사법,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및 공무원 임용시행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실시하고 있으니,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부정한 목적으로 응시원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서류 등을 위·변조한 경우에는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 자격이 정지됩니다.**

다. 시험 실시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 합격자 공고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자격요건 미해당자의 응시 및 관련 증빙자료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마. 응시자는 접수증,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바. **동일한 모집공고 / 일정으로 진행되는 채용시험 내에서는 중복 또는 복수로 응시할 수 없습니다.**

사.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아. **신원조사**는 서류전형(1차) 합격자에 한하여 시행하며, 관련 내용은 서류전형(1차) 합격자 공고에 포함하여 공고됩니다.

자. 기타문의 : 해병대 군무원과 군무원채용담당(☎ 031-8012-3142)

<참고1>

# 순직자 분류기준표[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3제1항제2호 관련]

| 구분 | 기준번호 | 기준 및 범위 |
|---|---|---|
| 순직 I 형 | 2-1-1 | 심해(深海)에서 해난구조, 잠수작업 또는 수중 파괴작업 중 사망한 사람 |
| | 2-1-2 | 지뢰 및 불발탄 제거, 탄약 기능시험 또는 탄약 개수(改修) 업무 중 사망한 사람 |
| | 2-1-3 | 항공기나 낙하훈련기구로부터 낙하산을 이용하여 강하하는 훈련 또는 항공기를 이용한 헬기레펠(Helicopter Rappel: 헬기가 착륙할 수 없는 지역에서 헬기에 로프를 매달아 20~40미터 상공에서 하강하는 방법) · 패스트로프(Fast Rope: 헬기가 착륙할 수 없는 지역에서 적에게 노출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전고리를 사용하지 않고 로프만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하강하는 방법) 훈련 중 사망한 사람 |
| | 2-1-4 | 특수장비를 이용하여 수중이나 수상으로 절벽 상륙 임무 중 사망한 사람 |
| | 2-1-5 | 고압의 특수전류 분야 업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 |
| | 2-1-6 | 비무장지대나 적과 접촉하는 해역에서 수색·매복·정찰 중 사망한 사람 |
| | 2-1-7 | 화생방 및 화공약품 등 위험물 취급 업무 중 그 위험물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 |
| | 2-1-8 | 항공기, 헬기, 잠수함에 탑승하여 작전임무 중 사망한 사람 |
| | 2-1-9 | 범인 또는 피의자 체포임무 중 사망한 사람 |
| | 2-1-10 | 경호업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 |
| | 2-1-11 | 전사에 해당하지 않는 대테러 또는 특수작전수행 중 사망한 사람 |
| | 2-1-12 | 재난현장에 투입되어 응급대책·복구 및 긴급구조활동 중 사망한 사람(그 업무 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 귀대 및 부수적 활동을 포함한다) |
| | 2-1-13 | 간첩의 신고 및 체포 임무 중 사망한 사람 |
| | 2-1-14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계호(戒護)업무 중 사망한 사람 |
| | 2-1-15 | 전염병 환자의 치료 또는 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 |
| | 2-1-16 | 산불 진화작업(그 업무 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 귀대 및 부수적 활동을 포함한다) 중 사망한 사람 |
| | 2-1-17 | 2-1-1부터 2-1-16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타의 귀감이 되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 |



<참고 2>

# 군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 응시 및 가산 자격증

| 직렬 \ 자격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
| 행 정 | 자격증 미적용 | | | | |
| 군사정보 | 자격증 미적용 | | | | |
| 시 설 | 공조냉동기계, 가스, 기계안전 | 에너지관리, 가스, 배관, 위험물 |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가스, 산업안전, 일반기계 |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가스, 배관, 산업안전, 위험물 |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배관, 위험물, 가스 |
| 총 포 | 기계,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화공, 화공안전, 화약류관리 | 기계가공, 전자, 위험물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전자, 화약류제조, 화공, 화학분석, 화약류관리 | 기계조립, 기계설계, 설비보전, 자동화설비, 정밀측정, 전자, 화약류제조, 위험물, 화약류관리 | 기계가공조립, 전산응용기계제도, 기계정비, 자동화설비, 정밀측정, 전자기기 |
| 탄 약 | 화공, 화약류관리, 화공안전, 산업계측제어, 컴퓨터시스템응용, 전자응용, 전기응용 | 위험물, 전자, 전기 | 화약류제조, 화공, 화약류관리, 화학분석, 소방설비(기계분야), 전자, 전자계산기, 메카트로닉스, 무선설비, 전기 | 화약류제조, 위험물, 화약류관리, 전자, 소방설비(기계분야), 전자계산기제어, 전기, 자동화설비, 무선설비 | 화학분석, 화약취급, 위험물 |
| 전 차 | 차량 |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 자동차정비, 궤도장비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 자동차정비, 궤도장비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궤도장비정비, 건설기계정비, 자동차보수도장 |
| 차 량 | 건설기계, 차량, 기계, 철도차량, 용접, 금형 | 건설기계정비, 자동차정비,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용접, 금형, 판금제관, 배관 |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자동차정비,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산업안전, 교통 |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자동차정비,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자동화설비, 철도차량, 철도운송, 건설기계설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자동차보수도장, 컴퓨터응용선반, 컴퓨터응용밀링, 연삭, 기계가공조립, 자동화설비,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기중기운전, 철도차량정비, 굴착기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피복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
| 기 체 | 항공기체, 항공기관 | | 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기관사, 헬기정비사1급 | 항공, 헬기정비사2급 | |
| 항공기관 | 항공기관 | | 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기관사, 헬기정비사1급 | 항공, 헬기정비사2급 | |

※ 폐지되거나 명칭이 변경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해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경우에는 응시 및 가산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기록사가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변경

[붙임 1]

# 응 시 원 서

**본인은 2026년도 후반기 해병대 일반군무원 경력경쟁채용 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병대사령관 귀하**

| | | | |
|---|---|---|---|
| **※응시번호** | | **성 명** | (한글) |
| **응시직위/응시직급** | / | | (한자) |
| **주민등록번호** | - | | |
| **주 소** | (우 ) | | **"정부수입인지" 부착하는 란** ("전자수입인지" 인 경우 원서 뒤에 첨부) |
| **전자우편** | | | |
| **휴대전화** | | | |

# 응 시 표

2026년 후반기 해병대 일반군무원 경력경쟁채용 시험

| | | | |
|---|---|---|---|
| **※응시번호** | | **성 명** | (한글) |
| **응시직위/응시직급** | / | | (한자) |
| **20 년 월 일**<br>**해 병 대 사 령 관** | | |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자필 또는 PC로 다운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응시번호**」: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위/응시직급**: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위/직급을 기재함
(예: 해병대교육훈련단 드론전술반장 / 교관 가군)

3. **주 소**: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정부수입인지**: 가까운 우체국에서 아래 해당 금액의 인지를 구입하여 붙이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 일반임기제군무원**

| 일반임기제군무원 | 금 액 |
|---|---|
| 5급・전문군무경력관 가군 이상 | 1만원 |
| 6・7급, 전문군무경력관 나군 | 7천원 |
| 8・9급, 전문군무경력관 다군 | 5천원 |

**○ 전문군무경력관 : 7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사실관계 확인 후 응시 수수료 면제(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반드시 첨부)

[붙임 2] ※ 다음 페이지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

# 경력경쟁채용 자격요건 증명서류 제출목록

※ 다음 페이지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

## 1 응시직급 및 해당 자격요건

| 성명 | 순번/<br>응시직급 | 자 격 요 건 |
|---|---|---|
| | | |

※ 공고문의 채용 자격요건 중 본인이 해당된다고 판단한 자격요건을 기재

## 2 응시자격 증명 제출 서류

| 목 록 | 내 용 |
|---|---|
| | |
| | |
| | |

※"1 해당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재 / 제출

## 3 모든 응시자는 반드시 임용예정일 前日까지 소속 근무지에서 전역·퇴직이 가능한지 소속 근무지 인사부서에서 확인하고 해당사항에 ○ 표시

| 가 능 | 불 가 능 |
|---|---|
| | |

※ 최종합격자 임용예정일 전일(前日)까지 현재 근무지에서 퇴직·전역이 가능하여야 하며 불가한 것으로 확인 될 경우 임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2026년 월 일

제출자 성 명 (서 명)

해병대사령관 귀하



# 경력경쟁채용 자격요건 증명서류 제출목록 (예시)

※ 공고문의 자격요건이 다음과 같은 경우(예시)

| 채용직급/인원 | | | | 응 시 요 건 | 근무예정지 | 임용예정일 |
|---|---|---|---|---|---|---|
| 소속/순번 | 직 위 | 직 급 | 인원 | | | |
| 해병<br>/ 1 | - | 총포<br>9급 | 1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br>① 하사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하사 이상 계급에서 총포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군인경력】**<br>② 9급(상당) 이상 군(공)무원 퇴직(예정)자로서 9급(상당) 이상 계급에서 총포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공무원경력】**<br>③ 총포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민간경력】**<br>④ 군무원 공개경쟁채용 응시 및 가산 자격증 중 총포 직렬 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총포 분야 2년(산업기사 이상은 경력 무관) 이상 근무경력자 | 전국 | '27. 2. 1.<br>이후 |

**[작성방법]**

## 1 응시직급 및 해당 자격요건

| 성명 | 순번/<br>응시직급 | 자격요건 |
|---|---|---|
| 김○○ | 1/<br>총포 9급 | ①~④ 자격 요건 중 본인이 지원하는 자격요건 하나 이상을 공고문 내용대로 그대로 기재 |

※ 예를 들어 ①의 자격요건에 해당할 경우

| 성명 | 순번/<br>응시직급 | 자격요건 |
|---|---|---|
| 김○○ | 1/<br>총포 9급 | ① 하사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하사 이상 계급에서 총포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군인경력】** |

* 공고문의 채용 자격요건 중 본인이 해당된다고 판단한 자격요건을 기재

## 2 응시자격 증명 제출 서류

| 목록 | 내용 |
|---|---|
| 1. 경력증명서 1부 | ① 00부대 00담당('00.00.00. ~ '00.00.00. / 00년00월00일) |
| 2. 기타 증빙서류 | ① 기타 확인이 가능한 서류 |

※ "1 해당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재 / 제출

※ 공고문의 자격요건이 다음과 같은 경우(예시)

| 채용직급/인원 | | | 응 시 요 건 | 근무예정지 | 임용예정일 |
|---|---|---|---|---|---|
| 소속/순번 | 직 급 | 인원 | | | |
| 해병 / 2 | 군사정보 9급 | 1 | **[군인사법 제37조 제3항의 행위자]** 군무원인사법 제7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군인사법 제37조 제3항의 행위(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를 한 군인(예비역 포함) | 전국 | '27. 2. 1. 이후 |

**[작성방법]**

## 1 응시직급 및 해당 자격요건

| 성명 | 순번/응시직급 | 자격요건 |
|---|---|---|
| 김○○ | 2 / 군사정보 9급 | **[군인사법 제37조 제3항의 행위자]** 군무원인사법 제7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군인사법 제37조 제3항의 행위(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를 한 군인(예비역 포함) |

* 공고문의 채용 자격요건 중 본인이 해당된다고 판단한 자격요건을 기재

## 2 응시자격 증명 제출 서류

| 목록 | 내용 |
|---|---|
| 1. 경력증명서 1부 | ① 군 경력증명서 또는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 2. 기타 증빙서류 | ① 기타 확인이 가능한 서류 |

※ "1 해당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재 / 제출



※ 공고문의 자격요건이 다음과 같은 경우(예시)

| 채용직급/인원 | | | 응 시 요 건 | 근무예정지 | 임용예정일 |
|---|---|---|---|---|---|
| 소속/순번 | 직 급 | 인원 | | | |
| 해병 / 6 | 시설 9급 | 2 | **[장애인 구분 모집]**<br>**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br>① 하사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하사 이상 계급에서 시설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군인경력】**<br>② 9급(상당) 이상 군(공)무원 퇴직(예정)자로서 9급(상당) 이상 계급에서 시설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공무원경력】**<br>③ 시설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민간경력】**<br>④ 군무원 공개경쟁채용 응시 및 가산 자격증 중 시설 직렬 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시설 분야 2년(산업기사 이상은 경력 무관) 이상 근무경력자 | 전국 | '27. 2. 1. 이후 |

**[작성방법]**

## 1 응시직급 및 해당 자격요건

| 성명 | 순번/응시직급 | 자격요건 |
|---|---|---|
| 김○○ | 6 / 시설 9급 | ①~④ 자격 요건 중 본인이 지원하는 자격요건 하나 이상을 공고문 내용대로 그대로 기재 |

**※ 예를 들어 ①의 자격요건에 해당할 경우**

| 성명 | 순번/응시직급 | 자격요건 |
|---|---|---|
| 김○○ | 6 / 시설 9급 | ① 하사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하사 이상 계급에서 시설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군인경력】** |

* 공고문의 채용 자격요건 중 본인이 해당된다고 판단한 자격요건을 기재

## 2 응시자격 증명 제출 서류

**1) ①~③의 자격요건에 해당할 경우**

| 목록 | 내용 |
|---|---|
| 1. 장애증빙서류 1부 | ① 장애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 |
| 2. 경력증명서 1부 | ① 00부대 00담당('00.00.00. ~ '00.00.00. / 00년00월00일)<br>② 00회사 00담당('00.00.00. ~ '00.00.00. / 00년00월00일) |

**2) ④의 자격요건에 해당할 경우**

| 목록 | 내용 |
|---|---|
| 1. 장애증빙서류 1부 | ① 장애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 |
| 2. 자격증 1부 | ① 00산업기사 자격증 |

※ "1 해당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재 / 제출

[붙임 3]

# 제출자료 검증에 관한 동의서

본인은 해병대가 시행하는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자로서, 본인이 제출한 경력증명서·자격증 등 제출자료 일체의 진위 검증을 위한 해병대의 확인서 발급 업무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 과정에서 원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 (인, 서명)

**해 병 대 사 령 관 귀하**



[붙임 4]

## 개인정보 제공 · 이용 동의서

해병대 주관 일반군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목적
   - 해병대 주관 일반군무원 경력경쟁채용 응시자격 확인을 위함.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직접 수집항목 :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병역, 가족사항
   - 관계기관 제공항목 : 국적·학력·경력·장애인.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등 자격 조회에 관한 사항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채용기간에만 채용 목적을 위해 제공 및 이용되며 채용절차 종료후 파기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제공·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응시 자격요건 확인이 불가하므로 이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 시험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시험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제공·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관계기관으로부터 위 항목을 제공 받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제출일자 2026. 11. .

성명 : (서명)

[붙임 5]

**보내는 사람**

| | |
|---|---|
| 응시순번 : | 1 |
| 응시직렬 : | 총포 |
| 응시직급 : | 9급 |
| 응 시 자 : | 해병이 |

* 응시순번은 모집공고문에 표시된 순번을 기재

**받는 사람**

우편번호) 18334

경기 화성시 봉담읍 시청로 1311

사서함 601(206-2호)

해병대사령부 인사계획참모처 군무원과

**군무원채용담당 앞**

**(☎ 031-8012-3142)**

< '26년 후반기 경력경쟁채용 응시서류 재중 >

붙임 5 - 1 - 1